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의 경험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and experience of immigrated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우교수 장 온 정**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 교수 박 정 윤***

Depart.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

Adjunct Prof. Chang, On-jeong

Depar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 Park, Jeong-yun

<Abstract>

This study reviews domestic violence characteristics, violence factors, and violence solving from survey reports, to find ideas that support shelter or counseling centers.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l review and inter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immigrant women experienced emotional , physical, sexual and econom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factors we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Korea husbands, culture gaps, communication problems and attitudes of mother-in-laws. Second, coping attitudes for immigrant women were passiveness and overt patience of violence situations. Third, professional social workers or counselors were lacking. There was no network link between related service agencies; in addition. Service content was limited, was a lack support for independence.

▲주요어(Key Words) : 결혼이주여성(immigrated women),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은신처(shelter)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중 일부는 안정적 이주 정착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여성과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한 한국남성과의 교환적 거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혼당사자들이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없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결혼성립과정에서의 문제와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 결혼 이후의 가족과 부부관계 형성 및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국인 남편의 거부장적 태도와 한국문화로의 일방적 적응을 요구하는 태도, 아내의 한국국적 취득 시 발휘되는 남편들의 절대적 권한,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통제 등은 한국 사회에 지지체계가 없는 이주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유발되기도 한다.

실제 결혼이민자가정의 몇몇 실태조사연구에서 부부간의 갈등 및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에 관

* 본 연구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본과제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 저 자 : 장온정 (E-mail : onj66@hanmail.net)

*** 교신저자 : 박정윤 (E-mail : pjy4838@cau.ac.kr)

한 상담비중이 각각 12.78%, 31.94%로 밝혀졌고¹⁾. 그 외의 정부부처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이주여성의 높은 수치의 가정 폭력 피해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부부관계 적용의 어려움과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거나 부부간의 갈등양상과 그 원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가정 내 발생하는 아내구타 및 폭력의 원인을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 차이, 한국어구사의 어려움, 사회적 활동기회의 차단, 남편의 음주문화, 남편과 시댁가족들의 가부장제적인 가치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결여 등으로 밝히고 있다(신경희, 2004; 양선화, 2004). 특히 결혼이민자여성들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신의 원가족과 떨어져 지냄으로써 개인적 지지망이 열악하며, 체류와 국적취득문제에 의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가능성과 위험성은 내국인 여성들의 폭력 피해상황보다 크고 지속적으로 유발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금연, 2003; 김상임, 2004; 김오남, 2006). 이에 따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조차 한국 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의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 내 만연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관련대책으로 결혼중개업자와 배우자 학대로부터의 이주여성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변화순, 2008).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가정폭력에 관련된 연구들은 결혼이민자여성의 폭력피해정도와 현황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폭력피해 경험과 폭력피해 시에 대처양식과 지원정책이나 제도에 지원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내국인들의 가정폭력과는 다른 배경 즉 문화적 차이, 지역 및 계층의 차이, 신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 지지기반과 지원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피해여성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검토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여성의 폭력피해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 분석을 통해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

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의 경험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의 특성, 배경요인, 대처 등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보호시설과 상담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밝힌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법률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2항에 의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아내폭행(wife-assault)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 등의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이고 있다. 아내구타와 학대는 여권주의적 시각에서 사용되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 및 범법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된다(변화순 외, 2008).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방임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정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임은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성학대는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폭력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신체적 폭력은 심리적 학대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심하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남편으로부터 비난과 욕설 등 심한 언어폭력을 동반한다.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자녀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구타 후

1) 2008년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2006년- 2008년 7월 상담

2) 2006년 보건복지부보고서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이주여성이 30%,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23.1%로 보고되었고, 여성부 조사(2007)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도 47.7%의 높은 부부폭력 발생률을 제시하였다.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도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받는 모든 유형의 폭력행위를 가정폭력의 개념으로 보고 그들의 폭력피해 경험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실시된 정부부처 및 기관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폭력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가정폭력의 발생비율을 보면 지역과 사례수 등에 따라 17.5%에서 47.7%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지역의 기관조사에서는 30%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2005)와 이주여성인권센터(2008)의 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22% 정도가 폭력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47.7%로 한국의 일반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 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은 연구대상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조사연구에서도 2005년 이후에 결혼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경우 학대와 폭력 때문에 이혼, 별거한 경우가 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10)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31.9%),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15.2%)등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46%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때리려는 위협(17.6%)과 뺨을 때리거나 흥기 혹은 마구 때리는 행위(10.6%), 물건 파손 및 집어던지는 행위(25%)등 직접 신체적 유해를 가하는 행위도 53%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여성인권센터(2008)의 연구조사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었다(10.1%)',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5.8%)', '물건으로 때리거나 세계 밀었다(4.9%)' 등 신체적 폭력이 20%정도 되었고,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9.8%), 위협적인 말(5.8%) 등 언어적 폭력이 20%정도 되었으며 그 외 성폭력이 3.8%정도로 밝혀져 대체적으로 '신체적 폭력'과 '언어 및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호이해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음주 및 사소한 말다툼', '경제적 원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가정불화', '음주', '성격차이'순으로 밝혀진 국내부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부부의 '성격차이'와 비슷한 개념인 '상호이해 부족'요인은 결혼이민자들이 흔히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

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는데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인 남편들의 배려없는 일방적인 주도는 결혼이민자여성의 폭력피해상황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부(2007)의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 시 폭력피해 여성이 함께 폭력행사를 하는 비율은 5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34.3%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방법을 모르는 경우가(23.9%)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17.4%)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폭력 피해시 대처법에 대한 정보에 매우 무지함을 알 수 있다(설동훈, 2006).

한편, 실태조사 외에 가정폭력 시설에 있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정도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홍계혜, 2000; 윤형숙, 2004; 한국염, 2004; 최금혜, 2005; 한건수, 2005; 김오남, 2006; 신경희·양성은, 2006).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가부장제도와 문화적 차이를 가정폭력의 배경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즉, 가정폭력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도에 따른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음주와 도박, 시부모의 간섭과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의 요인에 의해 가정폭력이 유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금혜(2005)는 가족 내에서 중국국적의 여성들이 소외된 아내,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 등으로 간주되면서 지지기반이 적은 외국아내의 배경과 사회적 편견 등이 아내 학대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김오남(2006)은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갈등은 남편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제적 문제영역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공동생활영역과 친인척, 자녀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이 연관되어 있으며, 남편이 외의 다른 부분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은 결혼성립부터 불평등으로 시작한 결혼생활이 문화적 양가감정을 가진 남편의 일방적 태도, 국적취득을 담보로 한 통제수단,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갈등, 고부간의 갈등에 의해 확대된다고 지적하였다(신경희·양성은, 2006; 한국염, 2004)

지금까지 실시된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갈등과 폭력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간단한 수치로 제시되었고 그 이후 여성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후의 이주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족 내의 갈등과 폭력경험을 조명한 사례중심의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가족갈등이나 폭력을 당하는 결혼이민자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한 연구는 여성들의 생활체험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들의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례연구들은 부부갈등 및 문제만 제시하였을 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주여성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가족갈등과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과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선행연구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책은 정책적 지원과 보호서비스 지원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정부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자 여성의 체류자격 유지 완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 고충상담과 무료법률 상담 등을 통해 신분보증이 취약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불이익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신분자격 조건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결혼 성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6월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 인권교육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또한, 2008년 10월-11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한국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충을 수집하고 있다. 실제 조사된 고충상담내용은 국적 및 출입국체류와 관련된 것이 각각 24.6%, 12.4%로 나타나 이들에게 법적 체류문제가 아직까지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정폭력, 자녀문제 등도 이들의 고충상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2003년 여성부와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부족,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법률지식의 부족, 그리고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 관리하고, 결혼이민여성 출국 전 사전정보 제공사업,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결혼 성립과정상 문제인 상호간의 정보차이와 비인권적인 중개실태로 유발되는 부부간의 갈등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3개국 현지에서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콜센터 설치하여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이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상담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상담, 법률구조기관 등관련기관 간 연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표 1>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2002 광주 발전센터	2004 광주여성의 전화	2005 보건복지부 전국결혼이민자 실태조사	2006 여가부, 결혼이민자 조사	2007 여가부 전국가정폭 력실태조사	2007 경기도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2008 이주여성 인권센터
폭력 발생율 (사례수)	30% (100명)	36.4% (140명)	22.3% (945명)	16.9% (905명)	47.7% (38명)	17.5% (810명)	22.2% (470명)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57%	17.6%	48.9%	2.1	39.1%	1.7%	20.8%
언어·정서적 폭력	18%	58.8%	36.5%	8.1	35.6%	5.1%	21.4%
경제적 폭력	12%	-	-	5.3	12.2%	3.6%	-
성폭력	-	-	22.1%	-	15.7%	-	3.8%
폭력 원인							
상호이해부족		33.3			47.4%	49.0%	35.7%
사소한 말다툼					17.8%	-	-
경제적		25.5				9.0%	8.3%
음주		15.7				14.3%	6.4%
기타		5.9			37.8%		8.9%
폭력 대응							
빌거나 그냥 참는다	64%	47.1	29.3	15.9	-		1%
도움요청	9%	5.9	0.8	2.1	34.3%		11%
맞대응	4.5%		14.6	8.6	52.6%		10.8%
기타				3.1			

방문교육 지도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보호서비스 지원책으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과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비스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베트남어 외 8개 국어를 통해 자국어 초기상담서비스 제공,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 정보안내, 긴급피난시설 및 보호시설, 의료 법률검찰, 경찰서비스 등과의 긴급지원서비스 연계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이주여성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 1개소 서울과 경기도는 각 2개소로 총 1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이주여성 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내국인 여성들을 위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어 시설 부족 및 시설운영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외국인 보호 시설의 통합과 분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폭력피해 여성의 경험사례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정폭력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폭력지원체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여 기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여성들의 폭력피해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대상자는 지역 내 상담 및 지원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상담지원을 받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과 지역 내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으로 선정하였고 면접내

용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유발 배경, 유형, 대응태도를 파악하였다. 면접자들은 6사례를 선정하여 보호시설 및 상담소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횟수는 대상별 1-2회,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30분-2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자를 동반하여 원활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이후 보호기관의 종사자, 상담자를 통해 보완하였다.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관한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자는 지역 내 가정폭력상담기관, 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현장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1-2회, 회당 2-3시간동안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면접내용은 충남지역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을 위한 지원과정상의 어려운 점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정책 및 서비스지원의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표 2> 참조)

심층면접 대상자인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접대상자들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학력은 무학에서 대졸자로 다양하다. 결혼지속기간은 대체로 5년 미만으로 결혼초기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업이 농사가 대부분이었다. (<표 3> 참조)

IV. 연구결과

1.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의 폭력 경험

1) 결혼이민자 여성이 경험한 가정폭력의 특징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특징을 살펴보면 폭력 피해자들은 언어적·정서적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

<표 2> 심층면접대상 현장전문가의 특성

사례	기관	연령	학력
기관 C	쉼터	48	대졸
기관 J	쉼터	30	대졸
기관 K	쉼터	52	대졸
기관 A	상담소	50	대졸

<표 3> 심층면접대상 결혼이민자여성의 특성

사례	국적	연령	학력	결혼시기	배우자 연령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사 레1	베트남	29	고졸	2005년	41	농사	대졸
사 레2	필리핀	38	대졸	1995년	46	농사	초졸
사 레3	중국	44	고졸	2008년	52	일용직	고졸
사 레4	중국	30	고졸	2007년	47	농사	고졸
사 레5	베트남	25	중졸	2008년	33	농업	모름
사 레6	베트남	38	무학	2004년	58	농사	모름

되어 있었으며, 그 외 경제적 폭력, 성적폭력 피해도 함께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가정폭력유형에 중복 노출되어 있었다. 폭력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폭력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었다. 가해자 남편은 주로 음주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었으며 우울증, 의처증과 같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술을 알코올중독자처럼 매일 먹어요 그래서 내가 '술 그만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때려요(사례 1)

결혼하고 좀 지난다음에 알았어요. 우울증도 심하고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어서 그런지 군대도 안갔다 왔대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 하면 막 화내요. 한 번은 학원에서 늦게 끝나서 과외 학생 아버지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걸 보고부터는 나를 자꾸 의심하면서 때리고 그래요. 부엌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몽둥이로 때려서 기절한 적도 있어요. 그 뒤로 안 그러겠다고 하구선 또 금방 다시 똑같이 해요.(사례 2)

남편이 약간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적도 있어요. 제가 잔소리를 조금하면 물건 던지고 때리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막 도망쳐서 나왔어요. 밤에 갈데도 없는데 도망나와서 찻집방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어요..(사례 5)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들은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 여성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집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직장 혹은 학원 등 장소에 구분없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사례 3의 경우는 동네 골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낚아채어 끌려 들어갔다는 등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수치심까지 조장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동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폭력피해 여성들은 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두려움, 공포감, 심리적 위축감 및 자괴감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혼란과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2) 언어, 정서적 폭력

언어·정서적 폭력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제일 많이 인식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폭력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과 거의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해 남편들은 아내와의 언어적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도 많이 하고, 나 마음 아픈 말 많이 해요..(사례 1)

또한, 피해 여성들은 남편 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시부모의 언어적 폭력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예의도 없냐.. 밥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해요(사례 6)

결혼이민자여성들은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언제 도망갈지 알 수가 없다', '말도 안통해서 답답해 죽겠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이 밥만 축내고 있다'는 등 내용면에서도 머니리를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욕하는 등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아주머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 했는데, 남편은 '형이 그럴 리가 없다. 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아님 형한테 꼬리 쳤느냐면서 나를 도리어 의심했어요. 너가 우리 형제간도 이간질시켜놓는다고.. 다 너 때문이라고요(사례 4)

(3) 경제적 폭력

남편과 가족들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을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고 아이 키우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억압하고, 실제로는 진정한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등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느끼는 모멸감과 소외감과 고립감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여성들은 남편들로부터 용돈은 물론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등 가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가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와 돈의 가치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돈 잘 안 줘요. 반찬거리 사려고 시장갈 때도 항상 남편이 같이 가서 돈 내고나는 그냥 집만 들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밖에서 들어올 때 사와요(사례1)

더욱이 아내가 취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 농사를 지어서 팔은 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은 돈 등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것조차도 남편이 빼앗아 자신의 유흥비로 쓰거나 관리하였다. 그리고 정작 남편 본인은 아내가 일하는 것만 믿고 경제활동을 게을리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랑 굴만 뜯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해도 나한테 돈 안 줘요. 잠잠할 때까지 일하고 또 옆집에 가서도 또 굴 까주고 했는데...(사례 4)

남편이 나가서 돈을 안 벌고 매일 술 먹고 놀아서 내가 영어학원에서 영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돈 받았는데.. 그냥 남편이 저금한다고 다 빼앗아가서 조금만 저금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썼어요(사례 2)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결혼한 이후 남편과 시댁가족들에 의해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 경우에도 자신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까지 착취당하고 있었다. 남편이 약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남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책임의식 없이 일을 하지 않고 놀게 될 경우, 시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생활이 궁핍할 수 밖에 없고, 외국인 아내에게 경제적 착취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4) 성적 폭력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성적인 폭력은 매우 수치스럽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성적 폭력의 형태는 주로 남편가해자가 외국인 아내의 감정이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외국인 아내가 남편의 성적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남편은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싫어도 부부는 남편이 원할 때 해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억지로 해서 아픈적이 많아요 어떤 때는 울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어요(사례 1)

더욱이 어떤 가해자 남편은 음란물을 같이 보고 그것을 어린 아내에게 그대로 하라고 시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들의 성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여성들 또한 어린 나이에 모국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남편의 성적 강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소에 야한 포르노를 보고 똑같이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싫어서 안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고 막 때렸어요(사례 5).

결혼이민자여성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시댁의 다른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례 4의 경우는 시아주버남에 의해서 성적 희롱을 당한 경우로 피해자이면서 남편에게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로서 비난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때는 제가 임신 중이어서 일 안나가고 집에 혼자 있었을 때예요. 남편 형님이 아무도 없이 집에 혼자 있는데 와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못하고 지낸다고 그런 이야기 해요. 한번 안아보자고 하기도 하고 내 손을 자기 다리에 만지게도 하고... 한번은 밤 늦게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기도 해요... 뭐라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사례 4).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이 중요한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두 사람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해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여성과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는 원활한 언어적 소통 부재로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부족한 채로 일방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가정폭력 유발 배경요인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심층면접결과를 통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가해자 남편의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가해자 남편들이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 약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 질환성 성향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사례 2의 경우 남편이 자기보다 학력이나 능력, 연령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아내에 대해 의심을 하는 의처증 증세가 매우 심하였다.

남편은 평소에도 우울 증세를 보여 군에도 가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에게 매우 의존적으로 살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수준까지 보이고 있었다.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아요. 친구도 별로 없는지 친구만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도 않구요. (사례 2)

시어머니하고 나는 열심히 농사일 하는데 남편은 일을 안하고 돈 관리만하고 자기는 나가서 친구들과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래요. 늦게까지 잠만 자구요. 남편이 일을 안하고 술만 마시니 일 좀 하라고 하면 잔소리 한다고 다 뒤집어 놓고 간다. (사례 1)

제가 영어학원에서 번 돈으로 기술이라도 배우러 학원도 좀 다니고 해서 제대로 일을 좀 해보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 돈으로 술 먹고 빈둥거리기만 하구. (사례 2)

가해자 남편들은 규칙적이고 안정된 직장보다는 농사 일 혹은 일용직 등 일정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게으르며 틈만 나면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지내려고 하는 등 의존적이며 낮은 자존감과 책임감 결여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2) 언어소통 및 문화적 배경 차이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는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상황이나 의견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 하는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에 대해 한국인 남편은 천천히 기다려주는 인내와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하고 언어가 안통해서 힘들어요. 남편은 밤에 놀러가요 같이 가자고 하는데 피곤해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간다고 하면 남편이 막 화내고 나가서 술 먹고 늦게 와요. (사례 4)

폭력 가해 남편들은 아내가 한국 사회에서 빨리 적응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았다. 즉, 가해 남편들은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자 하는 아내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능력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아내가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불쾌해 하거나 심지어는 한국말을 배우러 지역 내 기관에 다니는 것조차 막는 경우가 많아 두 사람간의 언어, 문화적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부부간에 언

어, 문화적 적응이 더 힘들어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한 가해자 남편들은 한국인 아내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알아서 행동하는 것을 외국인 아내에게 기대하여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다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컸으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참지 못하고 아내에 대한 분노와 폭력행위가 나타나고 있었다.

남편은 내가 밥도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 안 해도 착착 다 알아서 해 주어야 된대요. (사례 1)

(3) 시댁가족들의 태도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시어머니나 형제들은 폭력을 말리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 혹은 무관심으로 자신의 아들의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요? 남편이 그러면 옆에서 더 큰소리로 소리 질러요. 아니면 말리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무서워요. (사례 4)

시부모님 모두 모른척 하세요. (사례 5)

사례 1의 경우는 처음에는 아들의 폭력에 대해서 외국인 며느리를 숨겨주기도 하고, 잠깐 동안 피해 있을 곳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보호해 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폭력이 계속 되면서부터는 시어머니도 점차 방관자가 되어 간다고 하였다.

남편이 때리면 너무 심하면 아이와 같이 시아버지가 있는 산에서 지내게도 해주고 친척집이나 어머니 친구 집에도 숨겨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시어머니가 모른척해요. 그래서 배신감 느꼈어요. (사례 1)

면접 대상자들은 대부분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의 폭력행동에 대해 아무런 저지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모들이 아들을 힘으로 말리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며느리에 대한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은 폭력이 심해질수록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이 다수 대 혼자 겪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폭력을 당할 경우 더 큰 위협과 공포감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3)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일반적으로 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자녀문제로 인해 폭력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며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무척 놀래고 당황스러워 하였지만, 폭력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계속 피해를 입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은 그냥 참고 한동안을 지내고 있었다. 사례 2의 경우는 결혼초기부터 폭력을 시작하여 10년 동안 남편에게 폭력행위로 시달려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결혼을 주선한 종교단체에 의뢰를 했지만 매우 수동적 태도로 일관해서 계속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응하면 그 다음에 더 심한 폭력이 오기 때문이었다.

00교회에 가서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참고 잘 살아보라고, 인내하고, 남편에게도 간단히 말로만 타이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가정은 지켜야 한다면서...(사례 2)

이렇듯 결혼이민자여성들이 폭력을 당할 때 이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적기관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일부 피해 이주여성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거의 결혼초기인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결혼초기에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1의 경우도 시어머니의 보호와 지원으로 어느 정도는 참고 지내려고 했으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바로 가출하여 쉼터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어머니가 이제 내 편이 안되니 가출해야겠다.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살수는 없어요(사례 1)

사례 3의 경우도 폭력 피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폭력 상담소에서 남편과 가족 모두 상담을 받은 뒤에 보다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을 알고 배웠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초기 대응이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함을 지적해주고 있다.

처음에 두 번 정도 폭력을 썼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한테 신고했더니 쉼터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상담하고 남편도 상담하고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받고 이제는 잘 안 그래요. (사례 3)

2.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을 위한 기관 종사자의 문제인식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을 위한 현 지원체계에 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주여성 전담 상담원들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실제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상담을 의뢰하는 상담소는 대체로 일반 내국인들의 폭력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소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폭력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가 따로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현장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 내국인 상담소에서도 이주여성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원을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즉 이주 여성 전문상담원의 부재에 따라 이주여성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된 적도 있었고, 미묘한 감정이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말하는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꼭 통역사 그것도 잘 하고 능숙한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해요. 또한 문화가 다르다보니 여성들의 행동이나 요구가 무리하게 보이는 것일 경우가 많다.(C 기관)

더우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정에서는 내국인과 달리 국적이나 체류와 같은 법률적 지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인권의식 교육 등 상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기관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전문성과 지속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수교육 안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풀어내기는 협소하고 적고 어려워 하시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보통 가정폭력 방지법에 근거한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국적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비자에 분석도 어려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죠. (C 기관)

정기적인 교육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팀장회의에서 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법대 출신이라서 그 마인드가 돼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A 기관).

2) 폭력발생 초기개입의 어려움과 기관간의 네트 워크 부재
 상담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는 내국인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는 초기개입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지원절차를 거쳐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계가 이루어지지만 이주여성들의 경우는 언어소통도 어렵고 한국 사회에서 지지기반 없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선 남편 및 가족들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기초적인 상담 없이 바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포화상태일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즉각적인 상담개입이 있으며 쉽게 화해될 수 있는 자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설에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부족의 악순환을 겪게 됨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들 간의 합의된 지침서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상호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초기개입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어 보호시설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호시설로 보내어진다. 물론 시설에서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강하게 폭력으로 주장을 한다면 적어도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보내주거나 기초서류들을 보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저희는 멀리까지 가서 진단서를 받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초기지원이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게 이런 시스템 안에서 문제 인 것 같아요 (C 기관)

한편 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행정 기관들의 협력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집을 나오기 때문에 이주여성들과 아이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울 경우가 초래되어 이들을 지원하는데에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신원조회라는 게 너무 어렵죠 물론 악용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렵죠 지금 보호하고 있는 여성의 자녀 경우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분이 신분증이 없었어요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교육비가 30만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요. 그게 감당이 안돼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사정을 했었어요. (J 기관)

3) 폭력피해 지원대상의 한계와 자립지원 부족

현장활동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결혼이민자여성의 예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부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사회내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신분의 제한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들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사실은 노동으로 들어와서 한국인과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 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영역에 넣을 수 없어서 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범주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C 기관)

한편 폭력피해 여성들의 경우도 시설보호중 이혼을 하고 이혼 이후에는 한국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며 살고 싶어 하지만 시설보호이후의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즉, 피해 여성들이 일정기간 보호를 받은 이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은 부족하며 단지 몇 몇 곳에서 그룹홈 형태로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호이후의 자립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분들이 이혼을 하거나 결혼문제가 해결이 안되어도 경제적인 욕구 때문에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같은 곳에 자립상담터들이 있어서 연계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비인가 시설이에요.(J 기관)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정도의 자립시설이지요 사실 이들에게는 누군가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생활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자립하기에는 미약해요 저는 보호시설에서 조금 치료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우.(C 기관)

이처럼 현장의 전문가들은 일정기간 보호한 이후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와 물질적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위한 멘토 지원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보호시설 운영의 비현실성과 행정상의 비효율성

쉼터 현장가는 2009년부터 시설에서 보호받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긴급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긴급지원비에는 주식비, 교통비, 통신비, 법률비, 의료비 등의 항목이 있는데 그 지원액수가 적고 항목도 충분치 않으며 자녀를 위한 교육비나 용돈항목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보호시설에서는 초기와 달리 보호받는 대상이 이주여성 혼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동반하여 오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나 양육비 지원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이후 자국으로 보내줄 경우에도 출국비용 또한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가 책정되어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교육비를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한면을 느껴요.

긴급지원비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세요. 물론 여기서 숙식이 제공되지만 어쨌든 인권적인 차원에서 용돈을 줘요. 한 달에 2만원씩 아이 있는 사람은 3만원씩 자부담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긴급지원비로 줬으면 좋겠어요. (J 기관)

쉼터에서 애기 있는 엄마들을 왜 싫어하면 우유를 사줘야 하고 기저귀도 사줘야 하니깐 재정적으로 힘들거든요. (K 기관).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시설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피해여성들은 폭력피해에 의한 정서적 충격으로부터 안정을 피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상담치료과정이 필수적 과정이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보수교육과 전문가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시급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차원의 사회성 교육, 직업훈련 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관련 매뉴얼을 개발이 요구된다.

여가부에서 매뉴얼한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수교육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C 기관)

또한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평가에 있어서도 내국인을 위한 보호시설과 같은 지표내용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 당사자인 이주여성들이 평가문항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평가문항의 구성 또한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현실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복권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복권기금 이라는 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평가지라든지 프로그램 사전사업평가에 대한 것들이 이주여성특성에 맞게 정착이 안됐어요. 내국인에 맞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니까 이분들한테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고 우리쉼터 차원에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이주여성에 맞는 질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J 기관)

5) 내국인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의 통합 및 분리문제
일선 상담소, 쉼터 등에서는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 대한 통합과 분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먼저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는 이주여성의 상담도 같이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현재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이주여성과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효율적인 상담이 어려운 만큼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전문상담원'을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통역지원이 가능하도록 타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국인들을 위한 상담소의 상담원교육에 이주여성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상담을 끌어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 교육을 받은 분들은 더욱 더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담 상담원을 두고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C 기관)

가폭상담원들을 이주여성상담화를 해 주는거예요. 정규직으로 여기 한사람을 배치해 주는거예요. 이주여성전담 상담원을 배치 해 주는게 좋겠어요. (J 기관)

한편, 보호시설의 경우는 내국인과 이주여성을 분리하여 보호지원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보호시설은 상담시설과는 달리 장·단기적으로 생활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그 안에서 내·외국인간의 분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주여성들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과거에 비해 많이 생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보호시설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국인들이 이주여성이 타국에서 힘들게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고 보고 안쓰러워하여 잘 보살펴주기도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 이들이 타인까지 보듬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합니다. 또한 보호시설은 공동으로 기본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식사나 습관이나 잘 하지 못하여 내국인들이 떠 말아서 해야 하는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지게 되지요 내국인 입장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C 기관)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호시설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주여성들이 내국인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의 수적 증가와 시설종사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는 분리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모든 서비스가 통합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들어가면 있다면 통합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시설에서도 이주여성쪽에 공부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주여성만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K 기관)

보호시설의 경우, 일일이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다 지원해야 되고 상담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주여성 센터들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분들은 2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정직원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거죠. 자원봉사자분들은 거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죠(J 기관)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과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상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가정폭력의 특성과 배경요인, 대응방식은 어떠한지, 둘째, 이들을 지원하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의 지원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의 연구문제를 탐색하였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언어적·정서적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경제적, 성적 폭력의 피해도 겪는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가정폭력 유형에 중복적으로 노출되

어 있었다. 폭력의 배경요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우울증, 알코올중독, 정신지체 등의 개인적 특성과 언어·문화적 차이, 그리고 방관자적인 시댁가족들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더욱 폭력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들은 대부분이 폭력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일부의 여성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초기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결혼관계를 종결짓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초기대응이 가정폭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폭력피해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문상담원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폭력발생 초기개입의 어려움과 기관간의 연계 부재, 폭력 피해 지원대상의 제한과 자립지원 부족, 보호시설의 비현실성과 비효율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통합 및 분리 문제를 지원상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발생시 시설보호와 초기 상담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사회내 이주여성지원 대상 가정폭력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에서 시설보호지원까지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와 내국인을 위한 긴급지원전화 1366,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관간의 연계구성체를 형성해야 할 뿐 아니라 긴밀한 협조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내의 '가정폭력상담소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기관간의 상호 보완하고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폭력피해 지원 기관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피해자 상담지원의 전문성을 위해 지원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다문화 전문상담 교육 실시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피해 상담의 효율성을 위해 내국인을 위한 상담소내 다문화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거나, 기존의 상담원들에게 다문화적 사고와 감각, 다문화가족 실태와 이해, 이주민 관련 법률이해와 처리절차의 지원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다문화상담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이주여성 긴급전화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에게는 보다 심도 깊은 상담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보다 전문상담가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정기적으로 이주여성 상담 사례연구발표와 전문가집단으로부터의 슈퍼비전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상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과의 원활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통역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들이 상근하는 이주여성 긴급전화와의 보다 즉각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시통화가 가능한 전화연결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여성을 발굴하여 상담교육을 통해 확대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지원대상내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여성과 사실혼관계의 이주여성 등 서비스 지원대상의 유연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여성들 중에는 남편의 체류자격 신원보증기 없어서 쉼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피해상황이 입증되면 쉼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지만 실제 뚜렷한 신체적 폭력 이외의 폭력피해상황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의 확대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 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여성들에게도 혼인신고라는 법적 기준만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들만의 보호 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이주여성 전담 보호시설로는 수용인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먼 거리에 있는 여성들의 보호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쉼터의 추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 이주여성이 일정기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역량강화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활시설의 설치와 함께 그룹홈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지원,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내국인 쉼터와는 달리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이나 평가체계가 내국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조건에 맞게 구성된 기준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지원체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이주여성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평가지가 개발 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에게 적합한 평가내용과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구성·홍보하여 폭력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한 한국인 남편 및 예비 남편들을 대상으로 결혼, 부부간의 의사소통, 분노조절

방법, 갈등 관리 방법 등 부부간의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유발 요인인 알코올중독, 우울증, 의치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이들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면접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언어소통에 있어서 통역자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심포지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승권(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pp.63-106.
- 변화순·이미정·김혜영·황정미·이선형(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2008). 재한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결과 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지원 법률 및 정책현황", 「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32회 국회인권포럼 이야기마당 5월 21일.
-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족 :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1-20.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양성은(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pp.1-8.
- 양선화(2004).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관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실태보고토론회, 광

- 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자료집.
 여성가족부(2008). 2007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 적용과 폭
 력사이에서-, 이주여성인권센터
 최금해(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
 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한진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기념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황정미 외(2008).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정책, 전문가 포럼,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여성가족부

- 접 수 일 : 2010년 09월 15일
 심 사 일 : 2010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08일